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안

A New Model for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of South Korea

김 혜 경(Hae-Kyoung Kim)*

남 태 우(Tae-Woo Nam)**

초 록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는 사서직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윤리규정의 필요성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협회 및 전문직 단체에서는 전문직의 기준과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있으며,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와 더불어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 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일본, 한국 도서관의 사서직의 윤리규정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의 윤리규정과 한국의 것을 비교하여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개선된 사서직 윤리규정은 크게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로 구성된다. 정보윤리는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 검열의 거부, 사생활 보호, 사서의 중립성, 지적자유보장의 6가지 항목을 필수요소로 제안하였다. 전문직 윤리에는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등을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knowledge-based society of this age, librarianship takes a professional position and requires essential principles of ethics that has to be observed. Therefore, library associations and professional communities all over the world have released criteria and code of ethics to make their professional positions to keep.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in United States, Great Britain, Japan, and South Korea which are based on the mission of each library of each country. Based on these analysis and comparison, this research proposed more advanced codes of ethics for South Korea. The proposed model of codes of ethics consists of two parts: ethics for information and ethics for professional positions. The ethics for information contains six essential elements: equal access and services for information, denial of inspection, protection of privacy, neutralization of librarian, and security of intellectual freedom. The ethics for professional positions consists of 8 essential aspects: exclusion of personal benefit, continuous efforts for developing knowledge, keep the professional position, conflicts between professional task and organization, relationship with co-workers, ensure the conditions of rights and welfare for employees, cooperations among libraries, and contribution for creation of new culture.

키워드: 윤리코드, 윤리규정, 사서직 윤리, 사서직 윤리규정
code of ethics, librarian ethics, codes of ethics

*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ae092@dreamwiz.com)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4년 11월 19일

■ 게재확정일자 : 2004년 12월 3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 일컬어질 정도로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으며, 생성되는 정보의 양 뿐만 아니라 그 종류 또한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 전문성 또한 보다 심화되고 있다. 직업의 전문성 및 전문화에 따른 윤리문제 또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개인들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문직의 윤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각 협회나 단체에서 채택하는 윤리규정에 의해서 가치가 표명되고 의무와 책임을 정리하여 전문직 내에서의 지침을 제공해줌으로써 정립되고 있다.

도서관계에서도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역할 조명과 재고를 위해 사서직의 기준과 윤리규정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사서들로 하여금 명시된 기본적인 윤리개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 급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 사서들은 전문직으로서 자신들의 업무활동에 전문적인 기준을 적용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을 보면, 동적으로 변화하는 정보환경과는 동떨어진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정보접근의 제한 문제

나 저작권의 문제 등은 오늘날 도서관이 크게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도에 제정된 도서관인 윤리선언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사회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사서의 자세를 명시하는 명확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사서직 윤리규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의 윤리규정과 비교하여, 보다 발전적인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적합한 윤리규정의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내외의 문헌을 조사하여, 전문직의 의미와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윤리규정을 확인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국의 윤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였다.

셋째, 구분된 항목들을 통해, 각국의 윤리규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넷째, 추출된 윤리규정의 항목들과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의 도

서관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2. 전문직의 윤리규정

2.1 전문직의 의미 및 기원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그 명확한 의미를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 전문직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직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전문화된 지식과 장기간의 집중적인 학문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 직업”(Webster’s Ninthe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3)으로 전문직을 정의하고 있으며,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learned profession’으로 ‘학문적 직업’ 또는 ‘지적직업’이라 정의하

면서 일반적인 직업(occupation)과 구별하여 법률가, 의사, 성직자 등의 분야를 전문직으로 인정해왔다(Oxford 1989). 또한 문시영은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를 획득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전문직을 정의하고 있다(문시영 2004).

전문직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나 서양 중세시대의 장인조합(길드)에서 출발했다는 주장이 많다(Kizza 1998). 장인조합은 도제의 훈련기준이나 장인들의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에 따라 특정한 지식을 요구하는 작은 단체들이 발생하여, 지적능력의 중요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후,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전문직의 분야는 엔지니어링, 회계, 금융 등의 분야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각 전문단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능력기준, 교육 및 훈련 등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직업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임희섭 1990).

<표 1> 전문직의 특성

구 분	전문직	비전문직
이론 및 지적 기술	소 유	결 여
사회적 가치와 관련성	관 련	비관련
훈련기간	장 기	단 기
행위성향	하부문화 중시	하부문화 경시
동 기	봉 사	하 의
자율성	높 음	낮 음
연대의식	높 음	낮 음
윤리의식	성 숙	미 숙
훈련정도	전문화	비전문화

이러한 전문직의 특성을 기반으로, 문시영은 전문직 종사자를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구비한 자로서, 동료집단에 의해 형성되고 구속력 있는 윤리에 따라 자유권을 행사하는 자이며,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사회적 공헌을 기할 수 있는 자이며, 잠재된 위험의 결과들을 포함한 복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문시영 2004).

여기서 논의의 대상은 전문직이 지니는 권위의 독점적 성격에서 유래하는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이다. 파슨즈(T. Parsons)가 전문직의 권위를 ‘기능성’(functional speciality)이라고 부른 것은 전문직의 영역이 교육받은 특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직의 윤리규정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2.2 전문직의 윤리규정

윤리규정은 전문직의 의무와 책임을 정리하여 일련의 규칙의 형태로 만든 규정으로서 전문직 윤리의 특징과 과제를 반영한다. 전문직이 비전문직에 비해 고유하고도 고차원에 해당하는 도덕기준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요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May 1996).

전문직 종사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향유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위세, 그리고 독점성과 자율성의 혜택을 지니고 있는 만큼의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문직은 직업 자체의 성격, 즉 고도의 지적

수업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는 전문직의 특수성으로부터 전문직에 대해 특히 강한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특히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비윤리적으로 사용될 때 엄청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는 쉽게 발견되고 규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전문직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전문직이 누리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 및 그의 작업과정에서 행사하는 자율성은 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인의 영리를 획득하기보다는 사회전체를 위해 봉사하는데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직의 윤리규정은 사회전체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문직 형성의 역사를 보면, 전문직 단체가 윤리규정을 선언하는 것은 전문직의 전문적 됨을 입증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와 같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학협회(AMA)가 1847년 설립된 첫해에 광범위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윤리규정을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문직 협회들은 그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윤리규정을 채택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전문직 직위의 획득을 원하는 직업군이 윤리규정의 채택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Luegenbiehl 1999). 전문화된 직업집단이 집단의 이익을 초월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회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권한을 사회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외부세계에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서 전문직 윤리규정이 점차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규정은 4가지 차

원을 지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 전문직 단체가 정한 전문직 윤리강령, (2) 전문가 개인의 삶에서 형성되어 온 개인의 행동강령, (3) 전문직이 고용된 직장 및 기관이 부과하는 직장강령, (3) 전문직이 고용된 직장 및 기관이 부과하는 직장강령, (4) 지역과 문화에 따라 오랫동안 형성된 종교적·도덕적 신념 등에서 유래하는 지역사회강령 등이다 (Kizza 1998). 이것은 서로 상충될 소지가 있지만, 바람직한 것은 이 4가지 요소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윤리규정에 대한 평가는 일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히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회의주의자들과 이상주의자들의 관점으로서, 전자는 윤리강령이 엄격해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며, 후자는 냉소적 회의를 표명하는 부류이다. 반면에 이상주의자들은 윤리강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력히 옹호할 것이다. 즉, 전문직 윤리규정 중에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명예규정 및 징계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2.3 전문직으로서 사서직 윤리규정

사서를 위한 윤리규정에 대한 필요성 논의는 20세기 이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도서관 및 사서직 윤리규정은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최초의 도서관 및 사서직 윤리규정에 대한 논의는 미국에서 1903년과 1909년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다. 도서관 및 사서직 윤리규정에

대한 논의의 중점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담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의 존재, 그리고 정보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서직의 다면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DuMont(1991)는 이러한 도서관 분야의 윤리적 관심을 그 시기별로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30년대 이전의 기간으로, 도서관 장서자체에 관심을 기울인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는 도서관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장서개발과 유지에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이것은 장서로 인해 도서관의 자료가 잠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도덕적인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기는 1930년~1950년대의 시기로서 도서관 직원이 단순히 도서관 조직속의 일원이 아니라, 인간적 요구를 가진 개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인간적인 측면 및 직원과 이용자에 대한 윤리적 관심에 집중되었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직업보장, 근무조건, 교육 및 훈련과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였으며, 대중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사서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의무 쪽으로 강조되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할 윤리적 의무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관심은 부분적으로는 나치 독일의 파시즘을 일으키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며(Harris 1973), 'ALA 도서관 권리장전' 및 'ALA 윤리규정'과 같은 주요한 지적자유 문서들을 채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1939년 윤리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미국도서관 협회는 사서직이 전문직임을 획득하는 것과 사서직의 역할과 윤리적 의무를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60년대 이후로서, 윤리적 관심이 사회 전체의 보다 폭넓은 요구로 확대되었다. 공익성 향상과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며,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개념들이 도서관 직원들이나 도서관 이용자, 그리고 사회 이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긍정적 행동과 소외계층의 요구와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윤리적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참고사서의 윤리적 책임이 문제시 되어 왔던 시기이다. 이러한 세 가지 시기에 맞춰 미국의 윤리규정은 조금씩 변화되어 왔고, 현재까지 2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거친 미국의 윤리규정 변화는 윤리적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들 연구 가운데, Rubin과 Froehlich(1996)는 사서의 윤리적 관심사에 대하여, 자료의 선택과 검열, 사생활, 참고봉사, 지적소유권, 행정, 접근, 정보기술, 충성심, 사회적 문제의 9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 Kohler와 Pemberton(2000)은

사서의 윤리적 관심사를 6개의 주요한 항목으로 요약하였으며, 그 항목으로 이용자의 특권과 권리, 자료선정의 문제, 접근의 문제, 전문직의 실천 및 관계, 고용주에 대한 책임, 사회적 및 법적 책임을 들고 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표 2>와 같다(Koehler & Pemberton 2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의 연구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유사한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각 항목을 표현하는 용어가 극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대두되는 사서직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oehler과 Pemberton의 6가지 항목은 Rubin과 Froehlich가 규정한 관심의 주요영역 9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서직의 윤리적 문제는 Koehler & Pemberton이 제시한 6가지 영역으로 종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서직의 윤리에서 최근 들어 크게 대두되는 것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하는 문제들이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의 경우, 정보접근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여 윤리규정과 함께 상호보완하고 있다.

<표 2> 사서의 윤리적 관심사에 대한 비교

학 자	Koehler and Pemberton(2000)	Rubin and Froehlich(1996)
윤리적 문제	Client/Patron Right and Privileges	Privacy
	Selection Issues	Selection and Censorship Reference
	Professional Practice	Administration
	Access Issues	Acc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echnology
	Employer Responsibility	Loyalties
	Social Issues	Social Issues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변화는 과거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던 도서관에서 수행되었던 사서들의 역할과 기능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이 그에 상응하는 직업윤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사이버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네티즌의 윤리강령’이 제정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정보화시대에서 사서직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 시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주요 국가의 사서직 윤리규정에 대한 채택 및 개정 내용

3.1 미국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에서는 사서직의 직업윤리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 윤리강령의 시초는 1903년 뉴욕의 Pratt Institute Library School의 학장이었던 M. W. Plummer가 제시한 규범이다. 그는 도서관 교육과정내용을 설정하는 논문에서 사서들이 필수로 훈련받아야 할 분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직업윤리를 강조하여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하였다. 그 후, 1909년 Boston Athenaeum의 사서인 C. K. Bolton은 Plummer의 행동규범을 개정하고 여러 사람들의 충의를 모아 새로운 안을 만들어 The Librarian's Canon of Ethics라는 제목으로 학술지에 발표하여, 윤리규정의 문제를 연구하고 협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리하여 1922

년에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 윤리규정 토론이 있게 되자 사서직을 대표하여 그 학술지에 그가 작성한 사서의 윤리규범을 제시하였다. ALA는 1928년까지 윤리규정을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으나 10년이 지난 1939년에 정식으로 최초의 규정인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가 채택되었다. 이 최초의 윤리강령은 5부분의 2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939년의 윤리규정은 그 내용이 도서관 운영중심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용자 중심의 여러 가지 도서관 정책문이 전문직 내에서 작성 채택되면서 윤리규정과 보완관계를 갖고 사서직의 기준규범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예로서, 1949년에 채택된 도서관 권리 헌장(Library Bill of Right) 및 도서관계와 출판계 및 협회의 여러 선언문은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윤리규정과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후 30여년이 흐른 뒤, 1975년에 윤리규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윤리규정에서는 도서관 권리선언과 읽을 자유에 대한 선언문과의 밀접한 통합성을 나타내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장황하고 애매한 내용이라고 비판받던 1939년의 규정과 비교하면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으나 실용성과 더불어 사서직 품위의 필요성, 이용자 봉사에 대한 의무감 강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 후 다시 1981년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서론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윤리규정 개정의 필요성, 시민의 지적자유와 정보접근권에 대한 사서직의 책임, 정보유통과 사상전달에 대한 의무, 사서직 수행에 따른 자질과 능력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6개의 항목으로 천명하였다. 14

년이 흐른 1995년에 개정된 현재의 규정에서는 8개의 항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81년의 윤리규정과 비슷하지만, 특히 4항의 지적소유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법적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ALA의 사서직 윤리규정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되었으며,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미국은 윤리규정의 개정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정내용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A는 전문직에 필요한 윤리규정을 여러 번의 논의를 통

해 개정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의 윤리규정은 장황한 규정으로 구성된 반면, 1970년 이후에는 간략하게 명시된 항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윤리규정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이나 지침, 성명서를 제공하여 윤리규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도서관 권리선언이 ALA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2 영국

영국 도서관협회는 미국에 비해 전문적 윤

<표 3> ALA 사서직 윤리규정 채택 및 개정 내용

년 도	제안자 및 단체	개정 내용
1903년	M. W. Plummer	인격적인 훈련 제안 - 직업윤리와 행동규범 제시
1909년	C. K. Bolton	The Librarian's Canon on Ethics 발표
1922년	C. K. Bolton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사서직을 대표로 사서의 윤리규범 제시
1930년	ALA Bulletin 에서 윤리규정 제안	관리기구, 사서, 직원, 도서관 전문직 4가지 부문과 1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짐
1939년	ALA 채택(최초)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관리기관과 사서, 도서관이용자와 사서, 도서관과 사서, 사서와 전문직 사서와 사회와의 관계의 5가지 부문 및 28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짐
1975년	개정 Statement on Professional Ethics	도서관권리선언의 준수,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사적이익의 추구 금지, 도서관내의 인사관리 및 운영에서의 공정성 추구의 6가지 조항.
1979년	Draft	도서관권리선언의 이행준수, 이용자 사생활보호, 사적이익의 추구 금지, 전문서비스 제공, 인사관리의 공정성 6가지 조항.
1981년	개정 ALA Membership & ALA Council	평등한 봉사 및 자료제공, 자료검열 거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인사문제 및 동료관계 기회의 평등권 준수, 개인의 사견과 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의 명확한 구별, 사의 추구 금지의 6개 조항
1995년	개정 ALA Council	평등한 봉사 및 자료제공, 지적자유 원칙 지지와 자료검열 거부, 이용자의 사생활 및 기밀 보호, 지적 소유권 존중, 조직내 권리와 복지의 근로조건 준수, 사적이익의 추구 불가, 개인적 신념 허용 금지, 전문적 발전 향상의 8가지 조항

리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이 부족하였다. 이는 영국도서관협회의 헌장이나 조폐 세칙 등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회원의 입회단계에서 자격요건의 명시나 징계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어 회원이라면 이 협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따로 윤리강령을 작성하는 일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이순자 1992).

1960년대에 들어와서야 다른 전문직 단체의 영향과 미국도서관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 도서관협회는 전문직윤리작성위원회(Working Party on Professional Ethics)를 발족하고, 1980년에는 “직업 윤리 규정 초안(Draft code of professional ethics)”을 작성 발표하여 의견을 모았다. 윤리작성위원회 회장인 Usherwood는 윤리규정의 제정 이유를 “지식이 더 큰 힘으로 작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정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서나 정보관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 윤리규정은 전문직의 상징이다. 이는 종사자들의 전문직 수준향상에 대한 노력의 표현이므로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Usherwood 1981)라고 강조하였다.

초안의 작성과정에서 사서의 업무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와 사서 자신들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 윤리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분야를 6가지로 규정하였다. 즉, ① 사서의 업무수행능력, ②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신중성, ③ 독자적인 업무수행과 지적자유의 수호, ④ 무사공평한 전문성, ⑤ 재정적인 윤리성, ⑥ 인간적인 성실성이 윤리규정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Usherwood 1981). 이러

한 윤리규정을 통해 사서들은 자신들이 속한 사회와 봉사하는 이용자 그리고 고용되어 있는 기관에 대한 책임, 정보와 사상의 원활한 유통에 대한 책임, 업무수행 능력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 그리고 사서직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아야하는 책임을 질 것을 공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 초안을 작성하면서 위원회는 윤리규정의 내용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과 채택 이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전문직 단체의 책임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즉, 회원 및 관계 고객에서 규정의 내용을 홍보하고 사서의 비행을 알아내며, 징계수단과 벌칙규정을 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Usherwood 1981).

1980년의 초안은 많은 토론을 거쳐 1983년에 본안이 채택되었다. 여기에서는 초안에서 제시된 모든 사항을 수용하였지만 구성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 도서관협회의 법규와 세부시행사항과의 절대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라는 제목으로 오늘날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영국은 영국도서관협회와 정보전문가 협회를 통합하여 2002년 4월 도서관정보전문직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CILIP)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윤리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3.3 일본

일본의 도서관 윤리규정은, 그보다 앞서 제

정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도서관 윤리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 성립된 과정을 보면, 특히 1952년에 사회 안정을 위해 입법한 破壊活動防止法과 관련하여 경찰의 간섭이 도서관 자료검열이나 이용자 감시 등으로 나타나자, 일본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의 중립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圖書館雜誌에 미국의 도서관 권리선언을 소개하면서 도서관 현장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도서관내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1954년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선언은 미국의 1948년 도서관 권리선언을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선언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서관은 자료와 시설을 제공해야할 임무가 있음을 서문에서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도서관은 ① 자료수집의 자유, ② 자료제공의 자유, ③ 부당한 검열에 대한 반대를 확인하며 이러한 자유가 침해될 시에는 도서관인 모두가 끝까지 자유를 수호한다는 결의를 3가지의 항목으로서 표명하고 있다(日本圖書館協會 1954).

이 선언은 지나치게 간결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좀 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선언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1979년에 다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 항목이었던 부당한 검열에 대한 반대를 네 번째 항목으로 조정하고, 세 번째 항목으로 이용자의 비밀을 지킬

것을 추가하였다. 또한, '부당한 검열'을 '모든 검열'로 바꾸어 검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로써 이 선언문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포함하게 된 것이다(日本圖書館協會 1979). 이 선언문이 발표된 후, 도서관의 자유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서관원의 윤리규정의 제정이 검토되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과는 포리일체를 갖는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1980년에 윤리규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윤리규정은 미국이나 영국의 도서관계 같이 윤리규정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기 보다는, 규정 서문에서 밝혔듯이, 하나의 직업집단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각자의 판단에 의한 자각 이외의 구속력은 갖지 않고 있다.

3. 4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도에 한국도서관협회의 추진사업으로 "사서직 윤리현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도서관인 윤리선언 문안작성 특별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우선 "선언"의 기본관점을 "권리" 보다 "윤리"쪽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권리선언"은 추후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러한 합의 속에서 10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제1차 제안문, 제2차 제안문 에 대한 2차례의 지상공청을 가졌다. 그리하여, 윤리선언에 대한 3차 제안문을 작성,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 1997년, 1년간의 준비 끝에 제 35회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도서관인 윤리선언"이 선포되어 오늘날에 이르는 윤리선언이 된 것이다.

"도서관인 윤리선언"은 전문아래에 사회적 책무, 자아성장, 전문성, 협력, 봉사, 자료, 품위

의 7개의 대항목과 28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인 윤리선언 문안작성 특별위원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제정과정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한국도서관협회 1997, p.37).

한국의 도서관인 윤리선언의 제정 목적은 사서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지위는 전문지식의 심화를 통하여 또한 집단적 단결력에 의해서 성취됨을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사서직이 윤리선언을 통해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열어가갈 구체적 행동양식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4. 주요 국가의 사서직 윤리규정 내용 분석

본 장에서는 현재 준용하고 있는 사서직 윤

리규정을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을 대상으로 현재 준용되고 있는 윤리규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국의 윤리규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및 한국의 윤리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 윤리규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실질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1 미국

미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은 1995년도에 마지막으로 재개정 된 내용을 분석해보면, 총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평등한 봉사 및 자료제공 ② 지적자유 원칙 지지와 자료검열 거부 ③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및 기밀보호 ④ 지적소유권 존중 ⑤ 조직내 권리와 복지의

<표 4> 도서관인 윤리선언 제정과정

일 시	내 용
'96. 03. 18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사업체택
'96. 09. 21	“사서직윤리현장기초위원회” 구성, 첫 회의
'96. 10. 19	“도서관인윤리선언문안작성특별위원회”로 개편 위원 : 현규섭(위원장), 김정근, 이경규, 이용훈, 조원호
'96. 11. 01	'96 제34회 전국도서관대회에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 이후 네차례 ('96.12.17, '97.01.31, 2.14, 2.24) 회의를 거쳐
'97. 04. 12	제7차 회의에서 제1차 제안문 작성 - 紙上공청(도서관문화 3·4월호) 및 學界 공청회(4개 학회공동학술대회, 무주, 6.26-28)를 거친 후,
'97. 08. 28	제8차 회의에서 제2차 제안문 작성 - 다시 紙上 공청(도서관문화 7·8월호)과 일반공청회(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9.29)를 거침
'97. 09. 29	제9차 회의에서 제3차 제안문(위원회 최종 안) 작성, 사무국에 통보
'97. 10. 16	이사회에 상정, 심의 (예정대로 선포하되, 15개 항목의 자구에 대한 재검토 권고)
'97. 10. 21	제10차 회의에서 이사회 권고 안 신중 검토 후 “도서관인윤리선언”문 최종 확정
'97. 10. 30	제35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선포

근로조건 준수 ⑥ 사적 이익 추구 불가 ⑦ 개인적 신념 허용금지 ⑧ 전문적 발전의 향상의 내용이다.

현재의 미국 윤리규정을 1981년도 윤리규정의 내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①, ②, ③항은 동일하고 ④항은 법적으로 지적소유권을 인정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마지막 항목인 ⑧항은 윤리적 측면이 아닌 사서개인의 이념과 능력을 다룬 것으로, 이것은 지적 업무를 수행하는데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미국 윤리규정은 도서관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인 가치의 잠재적인 갈등 요인을 명백히 인식하고, 최우선적 가치를 확립시키고 있으며, 규정의 8개 조항은 접근문제, 저자와 창작자의 권리 및 고용문제라는 세 가지 일반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ubin 2000).

3가지 구분에 맞춘 ALA 윤리규정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조항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다. 네 번째 조항은 1995년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으로, 사서가 저작권 보호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 정보의 제작자나 창작자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에서의 중요한 참여자이기 때문에 이들 또한 윤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더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ALA 윤리규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피고용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상호의존 및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동료들의 대우,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치 사이의 충돌, 지속적 교육을 추구하고 조장할 의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여덟 번째 조항은 점차 증가하는 복잡한 정보기술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전문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ubin 2000).

<표 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Code of Ethics (1995)

구 분	조 항 내 용
이용자에 대한 접근문제	1. 평등한 서비스, 평등한 접근,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2. 지적자유의 원칙지지, 도서관 자료의 검열 저항
	3. 도서관 이용자의 사생활과 기밀 보호
저자와 창작자의 권리	4. 지적소유권의 인정 및 존중
고용문제	5. 동료와 다른 동업자들을 존경심, 공정함, 신한 확신으로 대우 기관의 모든 피고용인들의 권리와 복지 보장하는 고용조건 옹호
	6. 도서관 이용자, 동료 및 직장을 희생하여 사적인 이익 불가
	7. 개인적 신념과 전문직의 의무 구별하여, 정보자료에 대한 접근 규정의 공정한 표현을 방해하는 개인적 신념 허용 금지
	8. 지식과 기술의 유지 및 증진시킴으로써, 동료의 전문적 발전 장려 전문직의 잠재적 일원들의 포부를 촉진시킴으로써, 전문직에서의 탁월함 노력

4.2 영국

영국도서관협회는 1983년에 “Code of Professional Conduct”란 제목으로 1983년 승인되었으며, 일반적인 사서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있다. 도서관협회의 법규와 세부시행 사항과의 절대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협회구성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도서관협회 회원은 자신이나 동료들의 전문직 평가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그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제2부에서 협회의 규칙과 세칙을 우선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2번째 조항에서는 11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윤리규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항 a) 협회구성원은 협회의 헌장, 내규, 행동강령의 조항을 준수, b) 협회의 위상, 명성을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c)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 분야에서의 발전과 다른 사서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서가 유능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받을 수 있을 것을 보장, d) 사서직의 근본적 임무는 이용자의 이익을 고려, e) 이용자의 차별 없는 정보접근의 보장, f) 구성원(사서)은 고용주에 대한 계약적 임무에 최선을 능력을 발휘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전문직적 기준을 우선 고려, g) 인종, 피부색, 신조, 성에 대한 차별을 목적으로 자료를 고의로 증진시킬 수 없으며, h) 비밀문서에 대해 기록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법률이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에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만 비밀보호의 의무에서 면제, i)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 두 가지 항목인 j-k)에서는 윤리규정의 실제운영에서 회원들이 참여해야 할 의무를 제공하였다.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동료의 직무상 실수나 비행을 협회사무국에 보고하는 것과 징계위원회의 문의나 출두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3부의 3개 항목은 직무상의 비리가 인정될 때 취해지는 징계절차를 명시했는데 그 경중에 따라 경고나 훈계 등 내규의 세칙에 따라 처리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은 실효성이 부여되어 상당한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초안작성위원회는 이론적으로 적절한 윤리강령이라도 실효성이 결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실효성 여부를 영국 사서직 규정에서는 적시함으로써 강령이 단순한 나열보다 전문직 내부의 자기성찰이나 감찰의 도구로 인지도도록 하였다.

4.3 일본

일본의 경우, 사서직 윤리규정은 1979년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도서관은 이 선언문을 업무지침으로 받아들였고, 1980년에 이 선언문을 바탕으로 “도서관원의 윤리강령”이 제정되었다. 서문에서 ‘이 강령은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과는 표리일체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천명하면서, 이 강령이 필요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6〉 LA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1983)

구 분	조 항 내 용	
위상유지	1	협회구성원은 전문직 평가기준에 위배되는 행동 금지
	2	a. 협회의 헌장, 내규, 행동강령의 준수 b. 도서관협회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 금지
전문직 실천	c. 전문직 활동의 노력 i) 전문직 발전의 노력 ii) 유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의 보장	
	d. 사서의 근본적 의무는 이용자의 이익 고려	
이용자에 대한 접근 문제	e. 이용자의 차별 없는 정보의 접근 보장	
	f. 고용주에 대한 최선의 의무사항 노력 충돌 발생시 공공의 이익과 전문직의 기준을 우선시 고려	
	g. 인종, 피부색, 신조, 성에 대한 차별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 금지 (단, 연구의 목적일 경우는 제공 가능)	
	h i) 비밀문서 및 이용자의 비밀 유지 ii) 법률상의 요구나 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는 비밀보호 의무 면제	
	i. 사적 이익 금지	
	j. 다른 사서의 나쁜 평판 및 행동이 있을 경우 도서관협회에 보고	
	k. 협회구성원의 임무 i) 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견해나 정보에 대해 요구시 응답 ii) 내규에 명시된 의제가 있을 경우 회의 참석 iii) 행동의 지도가 필요한 구성원의 회의 참석	
조직에 대한 문제 및 규정의 실효성	3	a. 심각한 전문직 비행으로 간주시, 구성원의 추방, 정직 또는 배상, 벌금, 공판비용 지불 b. 2항에 기술된 조항의 불이행시, 경고 또는 행동에 대한 주의 지침 c. 내규 44-46항의 적용 가능

즉, 하나의 직업집단의 자율적인 규범으로 각각의 판단에 의한 자각 이외의 구속력은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일반인에게 사서의 전문성을 인식시키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윤리강령의 제정 필요성을 부가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1) 사서의 기본적인 태도, 2) 이용자에 대한 책임, 3) 자료에 관한 책임, 4) 훈련의 책임, 5) 조직 멤버로서의 책임, 6) 도서관간의 협력, 7) 문화창조 기여로 크게 7가지 부분으로 나뉘고 이 부문에서 다시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다.

일본도서관협회는 〈표 7〉과 같이 일본 도서

관의 현상을 감안해서 윤리규정의 제창 목적과 해당 규정의 유지방법, 규정의 개선 및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서관간의 협력’과 ‘문화창조에의 기여’ 등은 도서관원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대부분은 전문적인 직무내용과 이러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내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도서관법 제3조 4의 ‘공립도서관의 임무와 목표’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윤리규정의 내용은 영미의 윤리규정에 비해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

〈표 7〉 JLA의 圖書館員の倫理綱領 (1980)

구 분	조 항 내 용
사서의 기본적인 태도	1. 사회의 기대와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자료 제공
이용자에 대한 책임	2. 이용자의 차별금지, 이용자 권리의 평등성 보장 3. 이용자 비밀유지
도서관 자료에 대한 책임	4. 도서관의 자유수호,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제공의 노력, 검열거부 5. 소장 자료에 대한 지식보유
훈련의 책임	6. 전문직 훈련의 필요성 (도서관이용자, 도서관자료, 도서관자료의 조직 자료와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기술 등에 대한 지식 축적)
조직멤버로서의 책임	7. 기관의 운영방침과 봉사정책의 참여 8. 다른 사람들과 상호협력해서 전문직 능력 향상의 노력 9. 근로조건외의 확보
도서관간의 협력	10. 도서관간의 협력과 이해 유지 및 개발 노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11. 민주적인 문화환경 발달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12. 출판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

한다. 또한 일본도서관협회는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을 먼저 채택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윤리규정의 수립에 따른 단계적 도서관의 정책구조를 갖고 있다.

4. 4 한국

한국의 윤리선언은 주문 6개 조항과 28개의 행위지표로 설정된 것으로서, 3가지 이념과 이념구현의 4가지 촉매적 요소로 정의되었다. 먼저, 3대 이념은 민주주의의 수호, 자아성장,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으로, 첫째, 민주주의 수호는 도서관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구라는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정신을 명제로 삼았다. 둘째, 자아성장은 “량가나단”의 도서관 5법칙 중 5번째 항목인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이념을 포용하여 도서관인이 변화하는 문화와 역사 속에서 자아성장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셋째,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은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전문집단의

결속력 등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3가지 이념을 구체화 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적 요소로 4가지 항목이 정의되었다. 즉, 1) 협동력은 도서관간, 도서관인간의 협동력이 도서관인이 존속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2) 봉사정신은 부여된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초월한 보편적 정신의 표현으로써, 국민의 지식함양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이다. 3) 최종책임자의 권리는 예산낭비, 자료구성의 미비, 자료조직의 불완전, 이용자 보호 등 도서관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도서관인에게 있다. 4) 공익기관인의 품격은 도서관인은 공익적 비영리기관 종사자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가 있어야 한다. 등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3대 이념과 이를 구체화하는 촉매적 요소는 각각의 주문에 따라서 세부 실천강목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다음 〈표 8〉과 같다(현규섭 1997).

〈표 8〉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인 윤리선언 (1997)

구 분	주 문	실천강목의 용어
3대 이념	1. 민주주의의 수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의 알 권리 실현 국민의 자아각성 촉진 정보평등권 확보 문화적 선도자
	2. 자아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적 연구 역사적 사실 통보 난관극복의 의연성 이용자요구에의 대응력
	3. 전문가로서의 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지식 습득 이의 제기권 확립 자율성 확립 전문단체 참여
축매적 지표	1. 협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능력배양 사회기관과 협력 협력체제 구축 자관불이익 초월
	2. 봉사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계층적 봉사 명량한 태도 견지 차별철폐 사회적 인정 획득
	3. 최종책임자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기억 보존책임 표준화지향 자료선택의 자유 이용자 보호
	4. 공익기관인의 품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으로서의 긍지 부정한 사적 이익 거부 정직, 당당함 유지 지탄행위 배격

이러한 윤리선언의 내용은 도서관인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가치체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의 윤리선언은 도서관인들의 부족한 직무의식과 도서관이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현실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7개 주문 28개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 윤리선언은 사서의 덕목과 행위지표가 담긴 원칙적인 선언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나 7년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문과 용어가 디지털화시대를 제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도서관 환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정보윤리에 관련하여,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전자정보에의 접근, 저작권 문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사서의 중립성 결여 등 현재의 문제에 직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개정당시의 도서관 현실과 지금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삭제되어야 할 항목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2조 라항) 난관극복

의 의연성, 5조의 다·라항) 명량한 태도견지, 사회적 인정 획득, 7조 가·나항) 전문인으로서의 긍지 및 정직, 당당함 유지 등이다. 이는 사서의 인성과 개인적 성향을 표현한 것으로 국가차원의 윤리규정에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합한 조항이다.

4. 5 각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비교

앞서 살펴본 각국의 윤리규정의 변천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고찰해본 것을 기초로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사항들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에서 주요 4개국의 윤리규정을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의 2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정보윤리에서는 지적자유 보장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며, 전문직 윤리는 전문직의 실천 및 조직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윤리선언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

〈표 9〉 윤리규정의 내용요소 분석

	Category	Subcategory	미국 (1995)	영국 (1983)	일본 (1980)	한국 (1997)
정보 윤리	이용자의 지적자유 보장	평등한 접근	○	○	○	○
		자료검열거부	○	○	○	○
		지적자유보장방안 및 정책	○	○	○	
	정보제공과 관련된 문제	평등한 서비스 제공	○	○	○	○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	○	○	○
		저작권 존중	○			
		사서의 중립성	○	○	○	
전문직 윤리	전문직 실천 및 조직에 대한 문제	전문직 위상유지		○		○
		임무와 기관에 대한 임무간의 갈등		○		○
		조직의 인사문제			○	
		개인적 이익배제	○	○	○	○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		○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		○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	○	○	○
		도서관의 경영과 정책의 참여			○	
		전문직단체 및 조직활동 참여				○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	○
		문화창조의 공헌			○	○
		기 타	실효성여부		○	

본이 제정한 시기보다 훨씬 최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윤리를 다루는데 있어서 포괄적이고 막연한 문장으로 윤리규정을 제시하고 있었다.

5.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 제안

도서관 윤리규정은 각 국의 전통과 문화, 직

업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것은 상이하나, 개념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모든 국가에서 정보제공을 서비스하는 전문 봉사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서관 및 사서직 윤리규정에는 전문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과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의 사명으로서의 인간중심의 서비스라는 측면에서의 윤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시

대적인 변화나 각국에 처한 도서관의 환경에 따라 윤리규정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준용되고 있는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은 다른 국가들의 윤리규정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9>에서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한 접근 및 서비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권리는 평등하고, 인종, 피부색, 신조, 성에 대한 차별 없이,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최상의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평등한 접근의 경우,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도서관은 정책적으로 정보 접근이나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필터링 등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윤리규정에서도 윤리적 문제에 대한 성문화된 정책이 선언되어야 한다.

둘째, 자료의 검열은 도서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검열의 거부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의 윤리규정의 경우, 5조 나항의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용자의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의 이유로 들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외에도 사서가 도서관 선정가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한 내용이나 개인적 선호도나 취향에 근거한 자기 검열의 방지, 조직과 관련된 단체의 외압에 의한 검열 등 검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빠진 점이다. 이러한 검열에 관련된 항목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서의 중립성은 도서관 업무 수행시 사서직 스스로의 편견이나 견해를 배제해야 한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서의 개인적 신념

이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의 윤리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나 철학적 이념,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정보제공자의 위치를 찾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지적자유보장은 발표의 자유, 발표된 사상들에 대한 이용의 자유를 말하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과 발표의 자유를 의미한다. 도서관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공적기구이며, 도서관 사서는 이용자의 지적자유보장에 침해가 가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필수 사항이다. 이에 따라, 지적자유 관련 정책에 관한 내용은 미국, 영국, 일본이 따로 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도서관권리선언과 입을 자유에 대한 선언문 등 다양한 지적자유에 관련된 정책들을 윤리규정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고 일본 또한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하여 윤리강령이 이 선언문과 표리일체의 관계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윤리강령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영국도 지적자유와 검열에 대한 선언, 정보접근에 대한 선언문을 따로 채택하여 윤리규정과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선언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지적자유는 보장은 선언의 형태로 채택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한국의 윤리규정에도 이와 관련한 선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도서관의 이용기록에 대한

여 비밀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사항으로서, 한국의 도서관윤리선언 6조 라항에서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이용자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여기에는 대출정보 공개여부, 수사기관의 공개요구 등 다양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용자의 사전동의나 허락, 법정의 요구가 있을 때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조요소로서, 정보윤리에서의 저작권 문제이다. 이는 미국의 윤리규정에만 나타나있는 항목으로 미국도 1995년에 개정되기 전에는 저작권에 관련된 법적인 사항이 없었고, 1995년에 와서야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법적 책임을 마련하였다. 사서의 입장에서 보면,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하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최근 새로운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라는 사명과 배치되는 규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 면책규정과 같은 도서관 봉사와 저작자의 보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윤리규정의 실효성 문제이다. 영국만이 윤리규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상당한 강제성을 띠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는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문직의 특성과 그 역할에 대한 사회의 인정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전문직 윤리를 포함한 모든 윤리적 사유에 있어서 실효성 및 징계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윤리적 정화 및 결속의 유지를 명분으로 징계 또는 자율규제도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상황도 고려할

수 있는 절차와 목적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의 내용을 분석한 내용 및 이를 한국의 윤리규정과 비교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윤리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사회나 문화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국제적 표준안을 제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서관 및 사서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항목을 <표 10>과 같이 제안한다.

문헌정보학 관점에서 도서관 및 사서직 윤리는 도서관 정책적인 측면(정보윤리)과 사서의 역할의 관점(전문적 행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보윤리는 정보의 이용과 잘못된 이용에 대한 윤리로서 정보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혹은 제한된 접근, 사생활과 비밀보장 등 정보윤리적 요소를 조사하였다. 한국도서관인 윤리선언은 <표 10>에서 제안된 정보윤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정보윤리에 관련된 필수요소 가운데 대부분 요소는 현재 윤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서는 이용자에 대한 임무뿐만 아니라 전문직 및 소속기관의 일원으로서의 임무도 지닌다. 이는 전문직 윤리로서 보다 다양하게 그 항목들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윤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이익배제는 사서가 합법적 보상체계 이외에 사서직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항이다.

〈표 10〉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모델

	핵심요소	보조요소
정보윤리	평등한 접근	· 저작권의 인정 및 존중
	자료검열거부	
	지적자유보장방안 및 정책	
	평등한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전문직 윤리	사서의 중립성	· 조직의 인사문제 · 도서관의 경영과정정책의 참여 · 전문직단체 및 조직활동 참여
	개인적 이익배제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전문직 위상 유지	
	전문직 임무와 기관에 대한 갈등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문화창조에의 공헌		

둘째,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은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다.

셋째, 전문직 위상 유지는 전문직으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특히 영국의 경우, 도서관 협회와 전문직 단체에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넷째,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의 이익과 전문직의 기준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필수 사항으로서 전문직은 이용자에게 대한 임무를 소속기관에 대한 충실성 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는 동료와 업자들을 존경심, 공정함으로 대우하여 타직종에 대한 역할 이해를 함으로써 전문적 능력향상에 힘쓰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

여섯째,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는 도서관 봉사를 위해 적절한 근로조건외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다.

일곱째, 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은 도서관의 자유와 이용자를 위해 이와 관련된 개인이나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여덟째, 문화창조에의 공헌은 도서관이 지니는 사회적 책무로서 사회의 문화환경 조성과 출판문화와 더불어 문화유산의 책임에 필요한 사항이다.

그 밖의 보조요소로서는 조직의 인사문제, 도서관의 경영과 정책에의 참여, 전문직 단체 및 조직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전문직 실천이나 조직체의 전문성 관련 요소를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은 개정 및 채택 당시 도서관환경이 사회적으로 처해있는 위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경영이나 전문직 실천에 대한 내용은 좀 더 복잡한 것으로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세밀한 업무규정이나 고용규정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내용에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보

장정책과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6. 결 론

도서관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자료이용과 접근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정보이용과 접근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사서직의 윤리의식과 그에 따른 직업윤리가 존재하여야 하며, 도서관계는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문직의 역할이나 행동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확장된 윤리규정을 제시하여 윤리적으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에서의 사서직 윤리규정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추출하고,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에 대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서직의 윤리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정보윤리와 전문직 윤리가 밀접하게 혼합되어 나타난다. 먼저, 정보윤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이 윤리규정에 필요한 요소로 분석되었다.

- ① 평등한 정보의 접근과 ②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에서의 정책이 이루어져 이를 윤리규정에 지침을 제공 해야 한다.
- ③ 자료의 검열거부는 도서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단순한 자료의 검열뿐만 아니라 자기검열, 외압에 의한 검열 등 검열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지적자유보장은 발표의 자유, 발표된 사항들에 대한 이용의 자유이다. 즉 이용자의 지적자유보장에 침해하는 어떤 대상이나 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필수사항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선언문이나 정책관련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윤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은 도서관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윤리규정과 상호보완하는 정책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선언문이나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⑤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는 도서관의 이용기록에 대한 비밀유지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이러한 기록은 열람에 제한을 두거나, 보존 기간 등 유출되지 않도록 상세한 항목들이 필요할 것이다.
- ⑥ 사서의 중립성은 사서직이 도서관 업무수행시 자신의 편견이나 견해를 배제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견해나 편견으로부터 탈피하여 객관적인 정보제공자로서의 위치를 정립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윤리규정에 사서의 중립성을 규정해야 한다.

둘째, 전문직 윤리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국가마다 도서관이 위치한 사회적 환경에 의존 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두개국가 이

상이 공통된 필수 요소로서는 ① 개인적 이익 배제, ② 전문지식의 계속적 발전 및 노력, ③ 전문직 위상 유지, ④ 전문직 임무와 소속된 기관에 대한 갈등, ⑤ 동료 및 다른 업자와의 관계, ⑥ 권리와 복지를 위한 고용조건 확보, ⑦ 도서관간의 상호협력, ⑧ 문화창조에의 공헌의 8가지 항목이 전문직 윤리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 긴 문장의 선언문 보다는 현실성 있는 조항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윤리규정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도서관의 지적자유정책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윤리규정에 포함되면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윤리규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규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이다. 영국에서는 전문직 윤리규정인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어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효성 문제는 앞으로의 윤리규

정에서 자율규제로 시행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강제규제로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도서관계나 사서들에 의해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기구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도서관윤리선언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에 사서직 윤리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현장에서 실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

사서직의 윤리규정은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이다. 앞으로의 새로운 윤리규정은 과거의 윤리규정을 채택해오면서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윤리적 의무를 지니며, 오랜 관행에 의해 공인되거나 공인되지 않은 윤리규정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윤리규정은 사서의 미래 업무지침으로 수용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주원. 2003. 다시 생각하는 도서관인윤리선언. 『시민과 도서관』, 4(4): 7-19.
-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馬場俊明. 1993. 『自由宣言と圖書館』 東京: 靑弓社.
- 문시영. 2004. 전문직 자율규제의 윤리적 조건과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2: 233-251.
- 변우열. 2002. 도서관의 자유와 권리선언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3): 1-40.
- 손연옥. 1996. 도서관업무와 전문사서간의 윤리적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24: 485-517.

- 이관훈. 2001.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서울: 학지사.
- 이순자. 1992. 정보관리와 사서직 윤리. 『도서관학』, 22: 1-27.
- 이용봉. 1997. 정보전문직의 역할과 사회적 환경. 『문헌정보학논집』, 7: 75-99.
- 日本圖書館協會. 1980. 圖書館員の倫理綱領. 『圖書館雜誌』, 74(8).
- 日本圖書館協會. 1974.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圖書館雜誌』, 48(7).
- 日本圖書館協會. 1979. 圖書館の自由に關する宣言. 『圖書館雜誌』, 73(8): 418-419.
- 임희섭. 1990. 専門職의 직업윤리가 절실하다. 『한국논단』, 11: 110-117.
- 윤대혁. 2001.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서울: 무역경영사.
- 한국도서관협회. 1997.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 『도서관문화』, 38(6): 415-453.
- 현규섭. 1997. 도서관인윤리선언 제정의 의의. 『도서관문화』, 38(6): 454-458.
- ALA. "History of the Code of Ethics". [online] [cited 2004. 9. 15] <<http://www.ala.org/ala/oif/statementspols/codeofethics/coehistory/Default2092.htm>>
- Boaz, Martha. 1968-1985. *Code of ethics, Professional*.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Marcel Dekker. vol.3: 248.
- Bunge, C. A. 1991. *Ethics and the reference librarian*. In *Ethics and Librarian*, ed. by F. W. Lancaster. Urbana-Champaign: University of Illinois Graduat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61.
- DuMont, Rosemary. 1991. "Ethics in Librarianship: A Management Model." *Library Trends*, 40: 201-215.
- Dole, Wanda V. and Jitka M. Hurych. 2001. "Values for Librarians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10(2): 38-50.
- Gorman, Micheal. 2000. *Our Enduring Values: Librarianship in the 21 Century*. Chicago, ALA.
- Harris, Michael. 1973. "The Purpose of the American Public Library." *Library Journal*, 98: 2509-2514.
- Hauptman, R. 1988. *Ethical Challenges in Librarianship*. New York: Oryx Press.
- IFLA. "Professional Codes of Ethics/Conduct". [online] [cited 2004. 9. 15] <<http://www.ifla.org/faife/ethics/codes.htm>>
- Kizza, J. 1998.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Information Age*. New York: Springer.
- Koehler, Wallace. 2002.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ed. by Vaagan, Robert W., IFLA. *The Ethics of Librarianship: An International Survey*. Munchen: K. G. Saur.
- Koehler, Wallace & Michael Pemberton. 200. "A Search for core values:

- Towards a Model Code of Ethics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9: 26-54.
- Luegenbiehl, H. C. 1999. 『윤리강령과 도덕 교육』, D. E. Johnson ed,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이태식 외 공역. 『엔지니어 윤리학』 서울: 동명사
- May, L. 1996. *The Socially Responsible Self*. Chicago: Univ.of Chicago Press.
- Oxford English Dictionary. 1989. 2nd ed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ubin, Richard E. 2003. 『문헌정보학개론』, 구본영, 윤정옥 공역. 서울: 한국디지털도서관포럼.
- Usherwood, Bob. 1981. “Toward a Code of Professional Ethics.” *Aslib Proceedings*, 33(6): 233.
- Vaagan, Robert W. & IFLA. 2002. *The Ethics of Librarianship: An International Survey*. Munchen: K. G. Saur.

K C I